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종호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회 환경의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,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한 교육·연구사업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같이 공동 출연금이나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2022년 1월 11일 한국과학기술원법이 일부 개정됨(공포번호:18739)

한국과학기술원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양여,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·조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 따라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한국과학기술원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 전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 조항명을 “국유재산”을 “국유재산·공유재산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과 제1항 각 호의 물품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해당 국유재산 또는”을 “법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, 공유재산 및 제1항 각 호의 물품의 무상양여 또는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, 공유재산 또는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 “국유재산 또는 물품의 양여 또는 대부의 내용·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”을 “국유재산, 공유재산 및 물품의 양여 또는 대부의 내용·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는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또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
제13조(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) ② 법 제11조에 따른 <u>국유재산</u> 과 제1항 각 호의 물품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해당 <u>국유재산 또는</u> 물품의 관리청과 과학 기술원과의 양여 또는 대부의 계약에 따른다.	제13조(국유재산· <u>공유재산</u> 의 무상양여 등) ② ----- <u>국유재산, 공유재산 및</u> ----- ----- <u>국유재산, 공유재산 또는</u> ----- -----.
제14조(「국유재산법」 등의 준용) <u>국유</u> <u>재산</u> 또는 물품의 양여 또는 대부의 내용 ·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는 「 <u>국유재산법</u> 」 또는 「물품 관리법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	제14조(「국유재산법」 등의 준용) <u>국유</u> <u>재산, 공유재산</u> ----- ----- ----- 「 <u>국유재산법</u> 」, 「 <u>공유재산</u> <u>및 물품관리법</u> 」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	
연 락 처	(044) 202 - 4831